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1가단53074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2. 5. 24.

판 결 선 고 2022. 6. 21.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246,526원 및 그 중 20,022,915원에 대하여 2021. 9. 14.부터 2022. 3. 3.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1. 5. 25. 접수 제218005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A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1)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1) A이 2020. 6. 2. C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2025. 5. 20.로 정하여 대출받는 과정에서, 원고는 같은 날 A에게 보증기한 2025. 5. 20.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2) A이 위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1. 9. 14. C은행에 20,177,57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등

- 1) 피고 B은 2021. 5. 24.경 A에게 2,0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 2) A과 피고 B은 2021. 5. 24. A 소유인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3) A은 2021. 5. 25.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1. 5. 25. 접수 제218005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A의 재산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A은 시가 1억 5,3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 B, 신용카드회사,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 및 조세채무 등을 지고 있었고, 그 채무 액수 합계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또한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참조).

나.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에 의하면, A과 피고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2021. 5. 24. 당시에는 비록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전인 2020. 6. 2. 이미 위 구상금 채권의 성립 기초가 된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시점 당시 이미 원고가 신용보증을 한 A의 대출금 채무 상환이 연체되고 있었고, 그 결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원고가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9. 14. A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실제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한 이상,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채무자로부터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재산을 제공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나. 판 단

1) 앞서 살펴본 기초 사실의 인정 근거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A은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B의 A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A의 또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2) 피고 B은, A에 대한 정당한 채권자로서 담보를 받았을 뿐이므로,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나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더욱이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과 A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업관계임이 분명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이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였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피고 B의 주장에 따르면, A은 피고 B과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21. 3.경 동업관계를 해지하면서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동기 역시 원고를 비롯한 A의 다른 채권자들이 미구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설 것에 대한 우려에 근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 B의 주장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사해행위의 취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 B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 B은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건우

별지

1) 피고 B에 대한 손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A에 대하여는 이하 피고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